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59
----------	-------

발의연월일 : 2024. 5. 1.

발 의 자 : 소병철 · 박용진 · 전해철
민병덕 · 한준호 · 이재민
양경숙 · 백혜련 · 허숙정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 ·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 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가족을 돌보는 아동 · 청소년 · 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선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인생 전반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 · 서비스 지원, 상담 · 교육 · 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 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 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본인 및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가족 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 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건강관리 지원, 자립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등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 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모든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③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은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 · 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 ·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과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

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족돌봄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가족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생계와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업체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직업체험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거시설의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이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전담공무원) 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 지역 단위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복지단체(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 증

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